

규약정정주요내용

2010년 11월 16일

1. 정정대상 집합투자기구 :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2. 정정대상 서류 : 집합투자 규약
3. 정정대상 서류 최초제출일 : 2009.04.17.
4. 정정사유 : 펀드명 변경,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, 형태변경(주식형->재간접형), 위탁운용사 삭제, 해외보관대리인 및 관련비용 삭제, 주투자대상 변경(외국주식->수익증권등), 목적변경, 환매일정 변경, 50억미만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사항 정정등
5. 정정사항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변경사유
펀드명칭	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	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-재간접형]	명칭변경
제1조 (신탁계약의 목적)	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,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대신투자신탁운용(주) 와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,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대신자산운용(주) 와 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집합투자업자 사명변경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①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 " 라 한다.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<< 생략 >> 2. 증권 [주식형] 3. ~ 5. << 생략 >> ③ 이 신탁약관 시행일 현재,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 [주식] 2.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 2 호 [주식]	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"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- 재간접형] "이라 한다.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 << 좌 동 >> 2. 증권 [재간접형] 3. ~ 5. << 좌 동 >> ③ 이 신탁약관 시행일 현재, 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 [주식-재간접형] 2. 대신 지구온난화투자 증권 자투자신탁 제 2 호 [주식-재간접형]	명칭변경 주투자대상변경에 따른 형태변경 명칭변경 명칭변경
제4-1조 (외국통화 표시자산)	①집합투자업자는 법 42 조 제 1 항에 의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선정하여 신탁재산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	<< 삭제 >>	위탁운용사 삭제

<p>에 대한 업무의 위 탁)</p>	<p><u>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</u></p> <p><u>2. 조사분석업무</u></p> <p><u>3. 단순 매매주문업무</u></p> <p><u>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운용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,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합의한 금액으로 하며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.</u></p>	<p><< 삭 제 >></p> <p><< 삭 제 >></p>	
<p>제4-2조 (해외위탁 집합투자 업자의 명칭과 업무위탁 의 책임)</p>	<p><u>① 이 신탁계약 시행일 현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샘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지먼트(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)로 한다.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 또는 직접 운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해외자산운용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투자자문사를 선정, 변경, 해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</u></p>	<p><< 삭 제 >></p> <p><< 삭 제 >></p> <p><< 삭 제 >></p>	<p>위탁운용사 삭제</p>
<p>제4-3조 (해외투자 자문회사 로부터의 투자자문) → [투자자문 회사]</p>	<p><u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되는 외화표시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외투자자문회사를 선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투자대상의 선정과 관련한 조언</u></p> <p><u>2. 투자신탁재산을 위한 투자정책과 관련된 조언 및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투자정보나 자료를 제공</u></p>	<p><u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의 전문투자자문기관(이하 "투자자문회사"라 한다)을 투자자문회사로 선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 1 항의 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<u>1. 운용을 위한 자문업무</u></p> <p><u>2. 조사분석업무</u></p>	<p>자구수정</p>

	<p>3. 기타 제 1 호 내지 제 2 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</p> <p>② 해외투자자문회사의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와 자문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합의한 금액으로 하며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.</p>	<p>3. 기타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업무</p> <p>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투자자문회사의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문회사간에 합의된 방법과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.</p>	
제4-4조 (해외보관 대리인)	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,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.	<< 삭제 >>	해외보관대리인 삭제
제16조 (투자목적)	이 집합투자기구는 “지구온난화의 완화·적응·대응 분야산업과 관련된 전세계 기업” 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자형증권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증대를 추구한다.	이 집합투자기구는 “지구온난화의 완화·적응·대응 분야산업과 관련된 전세계 기업” 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자형증권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증대를 추구한다.	주투자대상변경에 따른 목적변경
제17조 (투자대상 자산 등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6. << 생략 >></p> <p>7.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(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“수익증권 등”이라 한다)</p> <p>가. 자산총액의 100 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</p> <p>8. ~ 10. << 생략 >></p> <p>② << 생략 >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6. << 좌 등 >></p> <p>7.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(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에 한한다. 이하 “수익증권 등”이라 한다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< 삭제 >></p> <p>8. ~ 10. << 좌 등 >></p> <p>② << 좌 등 >></p>	자구수정
제18조 (투자대상 자산)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	

<p>취득한도)</p>	<p>1. 외국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60% 이상</u>으로 한다.</p> <p>2. ~ 5. << 생략 >></p> <p>6.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5% 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%를 초과하여 수익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가.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</u></p> <p><u>나. 자산총액의 100 분의 95 이상인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</u></p> <p>7. ~ 10. << 생략 >></p>	<p>1. 외국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40% 이하</u>로 한다.</p> <p>2. ~ 5. << 좌동 >></p> <p>6.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60% 이상으로 한다. <<단서 삭제>></u></p> <p><u><< 삭제 >></u></p> <p><u><< 삭제 >></u></p> <p>7. ~ 10. << 좌동 >></p>	<p>편입비 변경</p> <p>편입비 변경</p>
<p>제19조 (운용 및 투자제한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2. << 생략 >></p> <p><u><< 신설 >></u>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2. << 좌동 >></p> <p><u>3.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동일집합투자업자에 의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<u>4.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동일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<u>5.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총발행집합투자증권수의 20%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<u>6.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%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<u>7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<u>8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</u></p>	<p>집합투자기구 운용제한 신설</p>

	<p>3. ~ 15. << 생 략 >></p>	<p>9~ 15. << 좌 동 >></p>	<p>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(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)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	<p>조 순연</p>
<p>제20조 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	<p>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<< 생 략 >>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,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6 호 내지 제 10 호, 제 19 조 제 2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제19조 제2호 본문,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<< 좌 동 >>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,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7 호 내지 제 10 호, 제 19 조 제 2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9 호내지 제 13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제19조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자구수정</p>	
<p>제26조 (환매업무)</p>	<p>① ~ ⑤ << 생 략 >></p> <p>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</p>	<p>① ~ ⑤ << 좌 동 >></p> <p>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</p>	<p>환매일정변경</p>	

	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8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 9 영업일) 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⑦ ~ ⑧ << 생략 >>	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10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 11 영업일) 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⑦ ~ ⑧ << 생략 >>	
제27조 (환매가격)	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 4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5 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으로 한다.	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제 5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6 영업일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으로 한다.	환매일정변경
제42조 (기타 운용비용 등)	① << 생략 >> ② 제 1 항에서 "비용"이라 함은 투자신탁 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 ~ 8. << 생략 >> 9.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. << 생략 >> ③ 제 2 항 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, 수수료율, 지급 방법 및 기일 등은 해외보관대리인에 관한 당사자(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해외보관대리인)를 말한다)간 합의에 의한다. 또한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. 1. 건당 결제비용(Transaction fee) 2. 보관비용(Safe-keeping fee) 3. 기타 부수비용(Out-of-pocket expenses : physical registration, DR conversion, tax reclaim, income collection 등)	① << 좌동 >> ② 제 1 항에서 "비용"이라 함은 투자신탁 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 1. ~ 8. << 좌동 >> 9. << 삭제 >> 10. << 좌동 >> << 삭제 >>	해외보관 대리인 관련비용삭제 해외보관 대리인 관련비용삭제
제45조 (집합투자 기구의 해지)	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<< 생략 >>	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<< 생략 >>	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조항 수정

	<p><u>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</p> <p><u><< 신 설 >></u></p> <p>② ~ ③ << 생 략 >></p> <p>④ 제1항<u>제3호</u>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<u>3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<u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p> <p>② ~ ③ << 좌 동 >></p> <p>④ 제1항<u>제3호 및 제4호</u>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	
부 칙	<p><u><< 신 설 >></u></p> <p><u><< 신 설 >></u></p>	<p><u>제 1 조(시행일) 이 규약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 2 조 (취득한도등의 예외) 제 18 조제 1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은 이 규약 변경 시행일로부터 20 일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	

Trust & Finance